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17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23　　송정현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05. 5. 23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5. 25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2005년 3월 28일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운영의 능률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개정(안 제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2005. 3. 28 조례 제1806호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일부 지정하였으나 없어지는 부서와 신설되는 부서가 누락되어 금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시하여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므로 누락되거나 명칭변경된 부서를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주민지원과를 삭제하고 신설되는 부서인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삽입하고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당항포관광지관리사무소”를 “관광지관리사업소”로 명칭변경하고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중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 농업지원, 축산)"을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로 하여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는 개정되어야 함을 검토보고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5.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